

#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·입국 신고 강화

- 2017년 6월 3일부터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-

출처 : 농식품부 보도자료 (2017.5.24)

- 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(구제역·고병원성 AI) 국가를 방문,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(이하 “검역본부장”)에게 출·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구제역·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(법률 제14288호, 2016. 12. 2. 공포, 2017. 6. 3. 시행)에 따른 것이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\*가 출·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\*\* 대상이 되는바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#### \* 축산관계자의 범위

- ①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③ 수의사 ④ 가축방역사
- 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⑥ 동물약품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 ⑦ 사료 제조·판매자 및 고용인 ⑧ 원유 수집·운반자
- ⑨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 ⑩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

#### \*\*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, 과태료 부과 기준

(입국 신고 위반) (1회) 30만원 (2회) 2백만원 (3회) 5백만원 (출국 신고 위반) (1회) 경고 (2회) 10만원 (3회) 50만원

-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\*란 해외 구제역·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,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(eminwon.qia.go.kr) 또는 전화(ARS 1670-2870)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- \*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검역본부에 반드시 확인필요

- ◎ 특히,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(인터넷: eminwon.qia.go.kr, 모바일: eminwon.qia.go.kr/m)하여 신고가 가능하다.
- 또한, 검역본부에 전화(1670-2870), 방문,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.
- 아울러,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·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.

- ◎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,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.